의 안	번 호	제	ই
의	결	2023.	
연 월	일	(제	회)

의 결 사 항

전 기 통 신 사 업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

	국무총리 한덕수
제 출 자	(방송통신위원회 소관)
세 풀 사	국무위원 이종호
	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

법제처 심사를 마침

1. 의결주문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 주도의 다양하고 유연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정부는 자율규제 활동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자율규제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고려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- 라. 기 타 : 1)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 - 2) 입법예고(2023. 7. 21. ~ 8. 31., 9. 21. ~ 10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법률 제 호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2조의11(자율규제) ①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, 기술발전 등 혁신 촉진,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 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정하여 시행하는 활동(이하 "자율 규제"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 - ②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는 효율적인 자율규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율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③ 정부는 자율규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 - 1. 자율협약의 제정 · 개정 및 시행
 - 2.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자율점검 및 개선
 - 3. 이용자 불만사항의 처리
 - 4.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디지털 역량 강화
 - 5.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의 공개
 - 6. 그 밖에 부가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활동

- ④ 정부는 자율규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자율규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- 1. 자율규제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
- 2. 자율규제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
- 3. 그 밖에 자율규제 확산에 필요한 사업
- ⑤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는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연 1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⑥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2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 제88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 중 "보고"를 "제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2조의11(자율규제) ① 부가통
	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
	단체는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,
	기술발전 등 혁신 촉진, 이용자
	보호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
	요한 사항을 스스로 정하여 시
	행하는 활동(이하 "자율규제"라
	한다)을 할 수 있다.
	②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
	신사업자단체는 효율적인 자율
	규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
	경우 별도의 자율기구를 설치ㆍ
	운영할 수 있다.
	③ 정부는 자율규제 중 다음 각
	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
	동에 대해서는 그 활동을 촉진
	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
	<u>수 있다.</u>
	1. 자율협약의 제정・개정 및
	<u>시 행</u>
	2.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자
	<u>율점검 및 개선</u>
	3. 이용자 불만사항의 처리
	4.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

고 및 디지털 역량 강화

- 5.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의 공 개
- 6. 그 밖에 부가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도모하는 활동
- ④ 정부는 자율규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자율규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- 1. 자율규제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
- 2. 자율규제의 확산과 활성화를

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
- 3. 그 밖에 자율규제 확산에 필 요한 사업
- ⑤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 신사업자단체는 자율규제와 관 런하여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의견을 밝힐 수 있 는 기회를 연 1회 이상 제공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⑥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단체의 자율규 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

제88조(통계의 보고 등) ① ~ ③ (생 략)

④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에게 <u>보고</u>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1. ~ 4. (생 략)

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 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 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수 있다. 다만, 제2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제88조(통계의 보고 등) ① ~	3
(현행과 같음)	
4	

---- <u>제출</u>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			
연	락	처	(044) 202 - 6635
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			
연	락	처	(02) 2110 - 1514